

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2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9. .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」의 적용범위에 기업도시를 포함하여 충주기업도시 조성으로 발생되는 공장폐수, 오수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개정

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⇒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

나. “적용범위”에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추가
(안 제2조제2호)

다. 관련법에 따라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추가(안 제11조제7호)

⇒ 생태독성(TU)

라. 배출허용기준을 설명한 2개항률 1개항으로 묶고 이해하기
쉽게 문맥 등을 정비함(안 제12조)

마. 징수유예 요건과 관련한 인용법의 개정내용 반영
(안 제21조제2호)

「지방세법」 제41조 ⇒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”를 “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”를 “조례”로, “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”를 “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.

1.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
2. 충주시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

제3조제1호 중 ““관리자”라 함은”을 ““관리자”란”으로, “처리시설”을 “폐수종말처리시설(이하 “처리시설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사업소장”이란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“사업자”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”을 ““사업자”란 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차집관거”라 함은”을 ““차집관거”란”으로, “관거 및”을 “관거와 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배수설비”라 함은”을 ““배수설비”란”으로, “발생되는”을 “발생하는”으로, “연결시키기”를 “연결하기”로, “관거 및”을 “관거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부담금”이라 함은”을 ““부담금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처리시설 설치비

제3조제6호나목 중 “처리시설 유지를 위한”을 “처리시설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오·폐수 등의 유입”을 “오·폐수 등의 유입과 방류”로 한다. 제5조 전단 중 “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”를 “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”로, “유입하고자 하는”을 “유입시키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변경하고자 하는”을 “변경할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”를 “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배출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)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공사때문에 파손된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.

제8조 중 “사업자가 배수설비”를 “배수설비”로, “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”를 “배출하려는 사업자는 규칙”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배출하는”을 “배출하려는”으로, “배출량 및”을 “배출량과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인정하면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유량계 및 수소이온 농도계 등의 설치)”를 “(유량계와 수소이온 농도계 등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“인정하는 경우”를 “인정할 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필요한 경우에는”을 “필요하면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)”을 “(처리시설의 기준 항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따른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”을 “따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기준항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생물학적”을 “생물화학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총 대장균 군수

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생태독성(TU)

제11조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별표 10의 규정”을 “별표 10”으로, “오염 물질”을 “수질기준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배출기준)”을 “(배출허용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오·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

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며, 제11조 각 호 외의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.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경우에는 유입”을 “때에는 유입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동처리구역 내”를 “공동처리구역”으로, “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므”를 “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동처리구역 내”를 “공동처리구역”으로, “소요되”를 “드”로, “포함된 경우 납부한”을 “포함되었으면 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”을 “제34조제1항 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처리하는 경우”를 “처리할 때”로, “관할”을 “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2조제8호 및”을 “제2조 제8호와”로, “발생되는”을 “발생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”를 “그 밖의 지역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 등을 하여”로, “처리하게 될 경우”를 “처리할 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의 산출기준과 부과·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운영 및 유지 관리비의 부담”을 “운영과 유지 관리비의 부담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처리시설의 운영”을 “처리시설”로, “하거나”를 “운영하거나”로, “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”을 “필요하면”으로, “위탁”을 “위탁하여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유입”을 “유입시켜”로, “소요되”를 “드”로, “납부하여야”를 “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요되”를 각각 “드”로, “구분되며 각각의 산출기준 및”을 “구분되며, 각각의 산출기준과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배출부과금의 종류 및 관련 근거)”를 “(배출부과금의 종류와 관련 근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”을 “법 제12조제3항과 법 시행규칙 제26조”로, “초과하는 경우”를 “초과할 때 부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

배출할 때 부과

나.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할 때 부과(폐수무방류시설에 한한다)

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

제18조제1항제2호 중 “운영으로 인하여”를 “운영으로”로, “초과한 경우”를 “초과하였을 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호 및”을 “제1호와”로, “경우”를 “때”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부담금의 관리 · 사용 및 징수유예”를 “부담금의 관리 · 사용과 징수유예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전입금 및 기타로”를 “전입금, 그 밖의 수입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0조의 규정에”를 “제20조를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운영 관리비와 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 · 관리에만 사용한다.

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의 교체 · 보완 · 신규투자

제20조제2항제4호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부담금의 징수유예 · 분할 납부 및 징수 절차)”를 “(부담금의 징수유예 · 분할 납부와 징수 절차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납부할”을 “낼”로, “인정되는 경우”를 “인정할 때”로, “분할하여”를 “나누어”로, “바에”를 “바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천재지변 기타”를 “천재지변, 그 밖의”로, “있는 경우”를 “있을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41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”로, “발생한 경우”를 “발생했을 때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”를 “이의가 있으면 납부기한까지”로 한다.

제23조(일반회계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 운영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.

제7장의 제목 “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”을 “부담금의 독촉과 체납처분”으로 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가산금) 관리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법 제49조의6제1항과 규칙에 따라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.

제25조 중 “부담금”을 “관리자는 사업자가 부담금”으로, “아니한 경우 관리자는”을 “않을 때에”로 한다.

제26조 중 “사업자”를 “관리자는 사업자”로, “아니한 경우 관리자는”을 “않으면”으로 한다.

제27조 중 “필요한 경우에는”을 “필요하면”으로 한다.

제28조 중 “등 부득이한 경우와”를 “등으로 부득이하거나”로,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인정하면”으로, “전부에 대하여”를 “모든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 제목 “(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)”를 “(배출 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정하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그”를 “정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사업자 등을 관리자에게 즉시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신규사업자는 양도.

제30조제1항 후단 중 “경우 신규사업자는”을 “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양도 · 상속 · 합병하고자 하는”을 “양도 · 상속 · 합병하는”으로 한다.

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”을 “자에게는 제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납부하지 아니한”을 “내지 않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조례 및”을 “조례와”로 한다.

제32조의 제목 “(사무의 위임 및 위탁)”을 “(사무의 위임과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사무의”를 “사무”로 한다.

제33조 중 “조례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</u>	<u>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</u>
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주시 산업 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충주시 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<u>제1조(목적) --- 조례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-----</u> -----.
<u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(이하 "처리 시설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 한다.</u>	<u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.</u> 1.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. 충주시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
<u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u> 1. “관리자”라 함은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충주시장을 말한다.	<u>제3조(정의) -----</u> -----. 1. “관리자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 폐수종말처리시설(이하 “처리시설”이라 한다)----- -----. 2. “사업소장”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

현 행	개 정 안
<u>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.</u>	<u>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한다.</u>
3. “ <u>사업자</u> ”라 함은 처리시설의 <u>공동처리구역</u>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.	3. “ <u>사업자</u> ”란 처리시설 <u>공동처리구역</u> ----- -----.
4. “ <u>차집관거</u> ”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<u>관거</u>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.	4. “ <u>차집관거</u> ”란 ----- ----- <u>관거와 그</u> ----- -----.
5. “ <u>배수설비</u> ”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<u>발생되는</u> 오·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<u>연결시키기</u>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<u>관거</u>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.	5. “ <u>배수설비</u> ”란 ----- -- <u>발생하는</u> ----- ----- <u>연결하기</u> ----- ----- <u>관거와</u> ----- -----.
6. “ <u>부담금</u> ”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. 가. 처리시설의 시설 설치비 나.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비 (운영 관리비·시설 재투자 적립금) 다. (생 략) 제2장 <u>오·폐수 등의 유입</u> 제5조(오·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) <u>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·폐수 등을 처리시설에</u>	6. “ <u>부담금</u> ”이란 ----- ----- -----. 가. 처리시설 설치비 나. 처리시설 ----- ----- 다. (현행과 같음) 제2장 <u>오·폐수 등의 유입과 방류</u> 제5조(오·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) <u>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<u>유입하고자 하는</u>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 받은 사항을 <u>변경하고자 하는</u>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6조(배수설비의 설치) 처리시설에 오·폐수 등을 <u>유입 처리하고자 하는</u>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7조(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)</u>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,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)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·폐수 등을 <u>배출하고자</u>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유량 조정조 등의 설치) 오·폐수 등을 <u>배출하는</u> 사업자는 유량 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<u>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관리자가 <u>인정하는 경우에는</u></p>	<p><u>유입시키려는</u> ----- -----. ----- <u>변경할</u> ----- -----.</p> <p>제6조(배수설비의 설치) ----- ----- <u>유입시켜 처리하려는</u> <u>사업자는 배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7조(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)</u>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공사때문에 파손된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래대로 복구 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) <u>배수설비</u> ----- ----- <u>배출하려는</u> <u>사업자는 규칙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유량 조정조 등의 설치) ----- ----- <u>배출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 <u>배출량과</u> ----- ----- <u>인정하면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7. 법 시행규칙 제26조 <u>별표 10</u>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<u>오염물질</u></p> <p>제12조(배출기준) ① 오·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.</p>	<p>8. ----- <u>별표 10</u> ----- ----- <u>수질기준</u></p> <p>제12조(배출허용기준) ① 오·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 물질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며, 제11조 각 호 외의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 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13조(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)</p> <p>① 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·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 제외(직 방류)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공동처리구역</u> 내에서는 「하수도 법」에 따른 개인 <u>하수처리시설</u>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</p>	<p>제13조(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때 에는 유입을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공동처리구역</u> ----- ----- <u>하수처리시설의</u> <u>설치 의무가 없으므로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	-----.
제14조(시설 설치비의 부담) ① <u>공동처리구역</u>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 시설 설치에 <u>소요되는</u> 비용(이하 “시설 설치비”라 한다)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, 부지 분양가에 <u>포함된</u>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.	제14조(시설 설치비의 부담) ① <u>공동처리구역</u> ----- ----- ----- 드----- ----- ----- <u>포함되었으면 낸</u>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하수도법」 <u>제34조제1항</u> <u>제1호의 규정</u> 에 따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	2. ----- <u>제34조제1항</u> <u>제1호</u> ----- -----
3.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<u>처리하는 경우</u> 에는 그 지역을 <u>관할하는</u> 시장	3. ----- <u>처리할 때</u> ----- <u>담당</u> -----
4. 「폐기물관리법」 <u>제2조제8호 및</u>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<u>발생되는</u>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	4. ----- <u>제2조제8호와</u> ----- ----- <u>발생하는</u> -----
② <u>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</u> <u>추가로 공동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</u> 오·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<u>처리</u> <u>하게 될 경우</u> 관리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 설치비를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	② <u>그 밖의 지역 사업자가 공동처리</u> <u>구역에 추가로 편입 등을 하여 --</u> ----- <u>처리</u> <u>할 때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	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설치비의 산출기준과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4장 운영 및 유지 관리비의 부담</p> <p>제15조(운영) 처리시설의 운영은 관리자가 직접 <u>하거나</u>,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<u>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</u>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<u>위탁</u>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유지 관리비의 부담) ① 처리시설에 오·폐수 등을 <u>유입</u>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<u>소요되는 비용</u>(이하 “유지 관리비”라 한다)을 관리자에게 <u>납부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에 <u>소요되는 비용</u>(이하 “운영 관리비”라 한다)과 시설 재투자에 <u>소요되는 비용</u>(이하 “시설 재투자 적립금”이라 한다)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7조(<u>배출부과금의 종류 및 관련 근거</u>) 배출부과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	<p><u>설치비의 산출기준과 부과 ·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4장 운영과 유지 관리비의 부담</p> <p>제15조(운영) 처리시설----- ----- <u>운영하거나-----</u> ----- ----- <u>필요하면 -----</u> ----- ----- ----- <u>위탁하여 -----</u> -----.</p> <p>제16조(유지 관리비의 부담) ① ----- ----- <u>유입</u> <u>시켜 -----</u> ----- <u>드-----</u> ----- <u>내야 -----</u>. ② ----- ----- <u>드-----</u> ----- ----- <u>드-----</u> ----- <u>구분되며, 각각의 산출기준과 -----</u>.</p> <p>제17조(<u>배출부과금의 종류와 관련 근거</u>)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1. 기본배출부과금(법 제41조) :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<u>법 제12조제3항 및</u> <u>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</u> 따른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<u>초과하는 경우</u>	1.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2조제3항과</u> <u>법 시행규칙 제26조</u> ----- ----- <u>초과할 때 부과</u>
2. 초과배출부과금(법 제41조) 가.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	2. ----- 가. <u>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</u>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<u>초과하여</u> 배출할 때 <u>부과</u>
나.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(폐수무방류 시설에 한한다)	나. <u>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</u> 배출할 때 <u>부과(폐수무방류</u> <u>시설에 한한다)</u>
제18조(배출부과금의 부담) ① 배출 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. 1.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. 처리시설의 부적정 <u>운영으로</u>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<u>초과</u> 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. <u>제1호 및 제2호외</u>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·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(생 략)	제18조(배출부과금의 부담) ① --- ----- -----. 1. 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. ----- <u>운영</u> ----- <u>초과</u> ----- <u>하였을 때</u> 3. <u>제1호와</u> ----- ----- ----- <u>때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6장 <u>부담금의 관리·사용 및 징수유예</u>	제6장 <u>부담금의 관리·사용과 징수유예</u>
제19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·② (생 략)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, 전입금 및 기타로 한다.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<u>제20조의 규정</u> 에 따른다.	제19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전입금, 그 밖의 수입으로 ---. ④ ----- <u>제20조를</u> -----.
제20조(세입금의 사용) ① 운영 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. ② 시설 재투자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1.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 · 보완 및 신규투자 2. · 3. (생 략) 4.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	제20조(세입금의 사용) ① 운영 관리비와 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에만 사용한다. ② ----- ----- -----. 1.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의 교체 · 보완·신규투자 2. ·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인정하는</u> -----
제21조(부담금의 징수유예·분할 납부 및 징수 절차)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	제21조(부담금의 징수유예·분할 납부와 징수 절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정할 때</u> ----- ----- ----- <u>나누어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<u>바에</u> 따른다.	----- <u>바를</u> -----.
1. <u>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도난 등</u> 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	1. <u>천재지변, 그 밖의</u> ----- ----- <u>있을 때</u>
2. 그 밖에 「지방세법」 제41조 에서 정한 징수유예 요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	2. --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 ----- ----- <u>발생했을 때</u>
제22조(이의신청)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<u>이의가</u> <u>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</u> <u>이의신청하여야 한다.</u>	제22조(이의신청) ----- ----- <u>이의가</u> <u>있으면 납부기한까지</u> ----- -----.
<u>제23조(일반회계의 준용)</u>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.	제23조(일반회계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 운영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.
제7장 <u>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</u>	제7장 <u>부담금의 독촉과 체납처분</u>
제24조(가산금)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1항의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관리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증가 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.	제24조(가산금) 관리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법 제49조의6제1항과 규 칙에 따라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.
제25조(부담금 독촉 등) <u>부담금을</u>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<u>아니한</u> <u>경우 관리자는</u>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	제25조(부담금 독촉 등) 관리자는 사업자가 <u>부담금</u> ----- <u>않을 때에</u>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강제징수) <u>사업자가</u>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<u>아니한 경우</u> 관리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.	제26조(강제징수) 관리자는 사업자 ----- ----- <u>않으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7조(자료의 제출요구 등)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<u>필요한 경우에는</u>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	제27조(자료의 제출요구 등) ----- ----- <u>필요하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8조(사용의 제한) 관리자는 재해 등 <u>부득이한 경우와</u> 공무상 필요하다고 <u>인정하는 경우에는</u> 차집 관거의 일부 또는 <u>전부에 대하여</u>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	제28조(사용의 제한) ----- 등으로 <u>부득이하거나</u> ----- ----- <u>인정하면</u> ----- ----- <u>모든</u> -----.
제29조(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) 사업소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	제29조(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) ----- --- <u>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사업자 등을 관리자에게 즉시</u> ----- ----- -----.
제30조(권리 · 의무의 승계) ① <u>양도</u> . 상속. 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	제30조(권리 · 의무의 승계) ① <u>신규 사업자는</u> <u>양도</u> .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 · 의무를 승계한다.</p> <p>② 사업장을 <u>양도 · 상속 · 합병</u> <u>하고자 하는</u>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<u>때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양도 · 상속 · 합병하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1조(유입 처리 승인 취소처분)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</u>에 따른 오·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<u>납부하지 아니한</u> 자 2. 이 <u>조례 및 규칙</u>에서 정한 유입 처리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	<p>제31조(유입 처리 승인 취소처분) - ----- ----- <u>자에게는 제5조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 <u>내지 않은</u> -- 2. -- <u>조례와</u> ----- -----
<p>제32조(<u>사무의 위임 및 위탁</u>)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른 <u>사무의 일부</u>를 사업 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32조(<u>사무의 위임과 위탁</u>) ----- ----- <u>사무</u> ----- -----.</p>
<p>제33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3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에</u> ----- -----.</p>

관 계 법령

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
제48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(이하 "종말처리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.3, 2009.2.6>
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(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)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
 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
 4.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1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)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
2.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수종말처리시설: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

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①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11.4.14>

1. 도시지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주거지역: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상업지역: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공업지역: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라. 녹지지역: 자연환경·농지 및 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

2. 관리지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보전관리지역: 자연환경 보호, 산림 보호, 수질오염 방지,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
나. 생산관리지역: 농업·임업·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
다. 계획관리지역: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·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·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

3. 농림지역

4. 자연환경보전지역

②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·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<개정 2011.4.14>

[전문개정 2009.2.6]